



Zoom-in Trade

▶ COVER STORY: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확대 1

▶ FTA NEWS: 한-페루 FTA 2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의 대외 무역 관리와 통관 신고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WHERE IS GRACE CHANG?: 느리게 걷기 7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지난 2009년 4월 시범사업체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가 도입 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컨설팅 비용의 부담, 전담팀 구성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AEO 인증을 획득하기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AEO 인증 획득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 규격 인증사업」을 진행하였고, 금년 4월부터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확대

I.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II. 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및 이와 거래하는 물류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추진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III.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아래의 업체를 지원한다.

- 수출업체
- 수입업체(수입업체는 수출부문과 동시에 신청시에만 지원)
- 보세구역운영인
- 보세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사
- 항공사 및 선사
- 하역업자

2. 지원범위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아래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 ① 컨설팅 비용
 - ② 관리책임자 교육비
 - ③ 기타 공인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비용
- * 컨설팅비용의 60%범위 내 최대 1,300 만원까지 지원(세부지침 운영 참조)
- * 보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공인획득을 완료하고 고시에 따른 완료보고를 한 경우에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인획득 완료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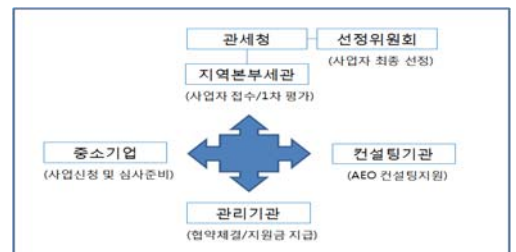
3. 관리기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 AEO 진흥협회」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공인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 공인인증획득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지급
- 공인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 공인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4. 지원사업 사업추진 체계도

지원사업과 관련된 당사자의 핵심 업무는 아래와 같다.



5. 지원사업 세부절차

- ①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매년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공고가 이루어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지역 본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다.
- ② 신청업체 평가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지원사업의 효율성, 수출 증대 기여도, 공인분야별 형평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지역 본부세관)에서 신청업체를 1 차 평가하게 되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 ③ 협약체결: 지원대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사단법인 한국 AEO 진흥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대상 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④ 인증획득 추진: 지원대상 업체는 컨설팅 기관과 협조하여 문서화, 관련실행자료 구비 및 현장심사 준비

등 인증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⑤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역별 본부세관 및 사단법인 한국 AEO 진흥협회는 과제추진 현황, 비용지출 확인 및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지원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대상 업체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⑥ 완료보고: 지원대상 업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인획득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공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AEO 진흥협회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획득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보조금 지급: 사단법인 AEO 진흥협회는 지원업체

로부터 완료보고를 받은 경우 심사 후 보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공인획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요비용을 선금급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인획득을 포기하거나 또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6. 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지원사업의 승계

지원대상 기업이 공인획득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사단법인 AEO 진흥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문 현

mhcha@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페루 FTA

2011년 3월 21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되었다. 이번 한-페루 FTA는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강화, 우리나라의 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및 한-페루간 자원 협력,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식지에서는 한-페루 FTA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1. 한-페루 FTA 체결 현황

한국과 페루는 지난 3월 21일 서울에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04.4), 싱가포르(06.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06.9), 아세안(07.6), 인도(10.1) 총 16개국이고, 한-EU FTA는 올해 7월 발효될 예정이며, 한-미 FTA 역시 향후 발효예정에 있다. 이번 정식 서명으로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서명하는 8번째(남미 지역과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FTA가 되며, 페루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45번째 국가가 된다. 한편, 한국의 對페루 수출입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19.8억불(수출 9.4억불, 수입 10.4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2006년의 10.3억불(수출 3.6억불, 수입 6.7억불)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¹

2. 한-페루 FTA 상품 양허

우리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 컴퓨터, 플라스틱 등으로 주요 7대 품목이 전체 對페루 수출의 80%를 차지하였고, 對페루 주요 수입품은 광석, 석유, 석탄, 커피, 차, 어류 등 대체로 1차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FTA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페루 FTA는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해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한-페루 FTA 상품양허 요약표이다.²

3. 한-페루 FTA 주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특징

(1) 원산지 증명 방식 (부속서 4A 규칙 1 및 4)

한-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양허	양허유형	페루양허
동광, 니켈광, 철광, 설탕, 향신료 등 10,004 품목	즉시철폐	대형승용차, 자동차부품, TV, 라디오카세트, 합성섬유 등 5001 품목
위스키, 비스킷, 아스파라거스 등 223 품목	3년철폐	면도기, 이발기 등 58 품목
바나나, 포도주, 어류의 유지 등 609 품목	5년철폐	중형승용차, 진공청소기, 인삼 등 934 품목
오징어, 닭고기, 녹두 등 524 품목	10년철폐	기타승용차, 냉장고, 모포류, 신발류, 돼지고기 등 1,240 품목
쇠고기, 고추, 마늘, 사과, 명태(냉동) 등 91 품목	현행유지	-
쌀 등 16개 품목	양허제외	쌀 등 5개 품목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수출자'³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증명'을 허용한다. 한편,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는 전면 '자율증명'체제로 전환된다.

(2) 원산지 결정기준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기존의 FTA 상 기준들과 유사하다. 다만,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가치비를 계산은 공제법(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 및 직접법(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3) FTA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및 사후적용 (제 4.3 조, 제 4.5 조)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그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국 법령에 규정된 기간 또는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는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하다.

(4) 검증 (제 4.8 조)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단,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등의 직접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당국이 반드시 관여(자료 요청 및 방문조사 동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4. 한-페루 FTA 활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인증 수출자 제도

한-페루 FTA의 인증 수출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EU 등 기타 FTA와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HS CODE에 대해서 수출량이 많은 경우 인증을 득하여 협정

한-미, 한-EU, 한-페루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
제도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자율증명
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인증 수출자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기관증명)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 증명)

발효시부터 5 년의 유예기간에도 자율증명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통관 후 입수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지연되어, 수입통관 시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협정세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수입신고 수리 후 1 년 이내에는 사후 환급의 형태로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3) 기타 유의점

통관 가치가 미화 1 천불 또는 수입국이 정하는 그 이상의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제 4.2 조)

한편 일단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타 FTA 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 5 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 4.6 조) 협정에서는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수출자의 경우 1)원산지증명서 사본 2)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3)수출신고필증, 재료의 수입신고필증, 4)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원재료 생산 및 구입 관련 증빙서류, 6)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¹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2011.3.16)

²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참조

³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②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와 통관신고

중국은 대외무역관리를 위해 대외무역경영자 등기관리, 수출입 검사검역, 외환관리 등 제도와 수출입금지, 제한, 자동허가, 반덤핑, 반보조금, 수출입외환결제관리 등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와 관련된 분야는 공업, 농업, 상업, 군사, 기술, 위생, 환경보호, 세무, 자원보호, 품질관리감독, 외환관리 및 금융, 보험, 정보서비스 등 수많은 영역에 걸쳐 있으며, 통상 관리목적에 따라 수입무역관리와 수출무역관리, 관리수단에 따라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 관리대상에 따라 화물수출입무역관리와 기술수출입무역관리로 나뉜다. 이하, 대외무역관리 개요와 무역관리조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통관신고의 의미 및 법률체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대외무역관리의 개요

가. 대외무역관리의 목적 및 특징

1) 자국 경제이익 보호와 경제 발전

개도국이 실시하는 대외무역관리는 주로 자국의 민족공업 보호와 자국 경제체제의 건립과 공고화를 위해 실시된다. 대외무역관리제도의 각종 조치를 통하여 외국제품이 자국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며, 자국의 독립된 경제구조의 건립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제한된 외환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이 실시하는 대외무역관리는 주로 자국이 세계경제에 있어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각국의 대외무역관리조치는 결국 모두 그 경제이익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2) 자국의 외교정책 추진·이행

선진국 또는 개도국을 불문하고 정치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국의 경제이익을 희생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시기·국가·상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외무역관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정치적 목적 또는 안전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관리는 가끔 일국의 외교정책 추진과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국가기능의 행사

주권국가란 자국의 자원과 경제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이고도 영구적인 주권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와 조치의 강제성은 자국의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장하며 자국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관리기능의 행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

2. 대외무역관리와 해관감관

가. 해관감관은 대외무역관리를 실현하는 중요수단이다.

해관은 수출입 관세 국경을 감독·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해관법》에서 부여한 권력에 근거하여 국가를 대표해 개항지에서 수출입 관세 국경을 감독·관리하는 직능을 행사하게 되는데,

해관감관은 바로 무역관리목표를 실현하는 효율적인 행정관리수단이 된다. 그리고 국가의 수출입무역관리정책은 국가상무주관부문과 기타 정부직능주관부서가 국가의 무역관리제도정책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해관에서 실제 수출입 되는 화물의 합법성에 대하여 감관을 실시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單(각종 신고서류를 포함한 신고서 및 기타 전자데이터를 포함)”, “證(각종 허가증명서, 관련 서류 및 그 전자데이터를 포함)”, “貨(실제 수출입 되는 화물)”의 상호부합은 해관에서 화물의 합법적 수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된다. 즉, 수출입화물은 오직 “신고서와 사실이 부합”되고, “신고서와 화물이 부합”되며, “신고서와 증명서가 부합”되고, “증명서와 화물이 부합”될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한 것이다.

나. 통관신고는 해관이 수출입화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선결조건이다.

해관은 “單(신고서)”, “證(증명서)”, “貨(화물)” 이 3 가지 요소를 심사함으로써 화물의 수출입

적법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3 가지 요소 중에 있는 “單(신고서)”과 “證(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신고절차를 통해 해관에 제출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신고는 해관에 수출입화물의 정황을 보고하고 그 신고 된 내용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면허(수리)를 신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관신고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절차일 뿐 아니라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선결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3. 대외무역관리의 기본 구조와 법률체계

가. 기본 구조

대외무역관리제도는 일종의 종합적 관리 제도로써, 주로 해관의 감관제도와 관세제도, 대외무역경영자관리제도, 수출입허가제도, 출입국 검사검역제도, 수출입화물대금수불 외환 관리제도 및 무역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관리의 각종 제도 실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을 핵심으로 하는 대외무역 관리의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아울러 이러한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규장과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대외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 법률체계

1) 법률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대외무역법》,《해관법》,《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통신문물 검역법》,《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약물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문화물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등이 있다.

2) 행정법규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행정법규로는《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관세조례》,《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중화인민공화국야생식물보호조례》,《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 등이 있다.

3) 부문규장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부문규장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수출대금회수외환관리방법》,《수입약품관리방법》,《정신약품 관리방법》,《방사선약품관리방법》,《양용물자(两用物项)와 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방법》등이다.

4) 국제조약

오늘날 중국이 서명하고 발효한 각종 국제조약들은 비록 국내법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효력면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주요 조약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TO 가입시 서명한 관련 양자 또는 다자간의 각종 무역협정, 《해관업무제도 간소화와 협조에 관한 국제공약(도쿄협약)》,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무역공약(워싱턴협약)》 등이 있다.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이 개정(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이 개정(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다.

- 수입물품의 가격 및 반입수량에 관한 공표 기준절차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명칭, 상호 및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공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구매수수료의 범위¹ 및 판단기준을² 마련하였으며, 이는 명목상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지정장치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 취급경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5 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동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 정치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반입정지일수 1 일당 연간매출액의 6 천분의 1 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 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2011. 1. 1. 공포·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2011. 4.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하여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함.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를 마련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구매수수료)의 판단기준 마련함.

-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인 기업을 추가함으로써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산업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서류의 제출기간 및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등)를 마련함.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3 월 30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고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 제도로 조세마찰 최소화 및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ACVA) 절차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는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의 설정,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 철회시기 명확화,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적 명시, 사전심사 절차 보완 및 심사중단 근거 신설 등이 있음.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 발굴사항으로 규정함.

- 기타 제도개선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점 개선에는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 사후귀속이익의 관련 규정 정비하였으며, 경쟁처분 적법성 판단을 위한 관세청장 사전 검토 규정 삭제함.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1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다.

- 수입신고필증 교부체계 변경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위·변조 방지가 표시된 전자적 방식 교부 및 신고서 정정시에도 전자적 방식으로 재교부 규정을 정비함.
- 업무처리 원활화를 위하여 신고각하 사유에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후 미도착화물을 추가하였으며,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개선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를 위한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코드 기재 및 주세면세부호 신설에 따라 면세부호 기재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함.
- 기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 및 서식 등 정비함.

□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2011 년 3 월 16 일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면제 대상에 157 건 이상 추가되어, 수출면제 비중(건수 기준)이 종전 35%에서 향후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CP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시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종전 5.8 일에서 향후 3.9 일로 개선될

전망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다.

- 수출허가 면제대상 기준 9 종에서 수출허가 면제대상 금액 상향 개선(미화 1 천불이하 → 3 천불이하)하고 CP 기업³이 '가'지역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등에 수출시, 암호화품목(ENC)에 대해 '가' 지역 또는 WA 가입국으로 수출시 허가 면제 등 면제항목을 추가.
- 자율준수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 단축(15 일 → 10 일)하며, 지정후 지정변경이 가능토록 근거 신설.
-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¹ “구매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함.

²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함.

³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로서 제조·무역업체가 자사 취급물품에 대해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말함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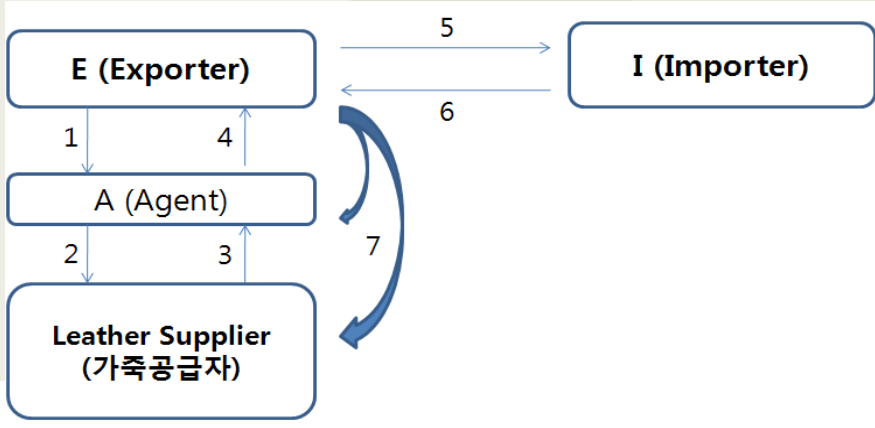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수입물품의 원재료구매에 따른 수수료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HQ545266 1993.06.30.)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간주되는지를 정의하고 있는 관세법 1401a (h).(1).(a)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용어가 아님.

나. Ruling HQ544423('91.6.3)
 의류제조자에게 공급되거나 수입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획득을 위하여 구매대리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가 생산지원비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바가 있음.

□ 결정(Holding)

수입장갑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가죽의 구매 즉 생산지원의 획득을 위하여 E 를 통하여 I 가 A 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생산지원 획득비용의 일부이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이 결론은 대리인이 진정한 의미의 구매대리인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

□ 거래사실(Facts)

- 원재료획득 및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수입자 I(Importer)는 수출자 E(Exporter)의 수출물품(가죽장갑)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매를 구매대리인 A(Agent)에게 요청함.
 - 구매대리인은 가죽생산에 필요한 가죽을 구매함.
 - A 는 원재료(가죽)에 대한 물품검수 및 E 에게 공급하기위한 선적을 수배함.
- 가죽장갑을 완성하여 수입자 I(Importer)에게 수출함.
- I 는 물품대금 (가죽비용포함)과 A 에게 지불할 수수료(가죽원재료 FOB 금액의 5%)를 함께 E 에게 송금함.
- E 는 A 에게 Agent 수수료를 송금하고 가죽비용을 가죽공급자에게 송금함.
- I 는 A 에게 지불한 구매수수료는 생산지원비가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I 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선적비용과 가죽의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고 수수료는 E 의 어떠한 이익도 구성하지 않으며 이를 규정한 계약서를 제출한 상태임.

□ 쟁점(Issue)

A 에게 지불한 수수료가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가. 관세법 1401a (B).(1).(C)
 "과세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5 가지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The preferred method of appraisal is transaction value, defined a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merchandise when sold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lus five statutory addition, including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19 U.S.C. 1401a(b)(1)(C).

나. 관세법 1401a (h)(1)(A)
 "생산지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물품 구매자가 당 해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을 말함.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재료, 구성요소, 부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사용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것.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기술, 설계, 도안, 공예, 디자인 등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2. 관련 예규

가. Ruling HQ544323('90.3.8)
 조달지원(Procurement Assist)이라는 용어는 어떤 재료 또는 용역들이 생산지원으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느리게 걷기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11년 4월.. 언제나 석간신문에는 대문짝만한 타이틀을 가진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금융기관 정보유출, 환율 하락, 휘발유값 인상, FTA 협정문 번역오류, 방사능 비, KAIST 생 자살, 건설사 PF 줄도산, 국회의원 재보선, 구제역 재발등....

늘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남들에 뒤쳐지지 않기 위하여, 아니 남들보다 앞서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뛰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느리게 걷기'라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 작은 공원을 마주하고 있었지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하는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도 그냥 한가로운 발걸 닿는 대로 거닐어 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긴장감을 버리고 느긋하게 걷다 보면 구매받지 않는 자유로움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AEO 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AEO 제도는 국제무역 및 물류상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무역 및 물류관련 업체에서는 이제는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AEO 인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여 AEO의 특혜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FTA 관련하여서는 한-EU FTA, 한-미 FTA 가 국회비준을 기다리느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써 국회비준 전에 신속히 인증을 받아야 무역거래에서 FTA 효과를 제 때에 볼 수 있습니다. 인증 수출자 제도는 수출후에 사후검증이 일정비율로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인증 준비 시에 전문가인 관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검증 시 추징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겠습니까. 한국과 Peru 간에도 FTA 서명이 종료되어서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한-페루 FTA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와 통관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개정된 관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수입통관, 전략물자수출입에 관한 고시들도 개정되었습니다.

관세평가에 관해서는 미국관세청 예규 중 수수료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끝자락에 잠시 찾아온 봄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꽃잎이 화려하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살짝 사무실 문을 밀고 나와 천천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 햇볕을 느끼며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삶의 현주소는 'Here and Now' 이니까요.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확대



차 문 현 관세사 (mh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 대덕전자, 부광약품, 지오디스코리아 등
다수업체 AEO 컨설팅

FTA News- 한-페루 FTA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임 창 환 세관장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 FTA Team

US Rulings 연재@ 수입물품의 원재료구매에 따른 수수료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